

울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합1707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강부환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49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2) 피고는 B과 부부사이이다.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과 이에 따른 대출

- 1) 원고는 2016. 2. 17.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억 8,200만 원 및 1억 800만 원, 신용보증기한 각 2017. 2. 17.까지(이후 보증기한은 2022. 2. 1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C은 2016. 2. 1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억 8,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 1) C은 2021. 3. 13.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21. 4. 1. 원고에게 C이 2021. 3.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1. 7. 15.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006,636,505원(= 원금 882,000,000원 + 이자 14,764,365원 + 원금 108,000,000원 + 이자 1,872,1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7,528,92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999,107,585원(= 1,006,636,505원 - 7,528,920원)이다.

3)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 4. 22.자 가처분, 2021. 7. 28.자 부기등기 등의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 3,783,272원이 남았다.

라. B의 처분 행위 등

B은 2019. 12. 1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2. 7.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B에 대하여 1,002,890,857원(= 대위변제금 잔액 999,107,585원 + 대지급금 3,783,272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다.

2) B은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B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나,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있는 E 주식회사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원래 소유자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의의 전득자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4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12. 18. 체결되었고, C은 그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한 2021. 3. 13.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C은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후로도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고, B과 피고가 15개월 이후의 C의 상황을 예측하여 강제집행에 대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였기는 하였으나,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뒤의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다.

③ D은 2019. 6. 10.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3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7. 10.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0. 2.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C의 경우와는 달리 B은 D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였고, B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계약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D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B의 경제적 상황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D의 채무현황이 B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주채무의 보증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보증인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경우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참조).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2. 7.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9. 12. 18. 기준으로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3,401,560,000원인 사실(이후 위 채무는 2020. 10. 18. 기준으로 3,284,890,000원, 2021. 4. 1. 기준으로 3,276,8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2017. 5. 12.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경주시 F 토지, 위 토지 지상에 위치한 C 소유의 공장건물, 위 공장건물 내에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2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③ 중소기업은행이 2017. 4. 11. 기준으로 평가한 위 공동담보의 감정가액 합계는 13,860,182,970원(= 토지 6,804,560,000원 + 건물 5,606,182,970원 + 기계기구 1,449,44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④ 원고는 2021. 7.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6,636,505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2021. 7. 20. 중소기업은행이 C에 대해 갖는 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대위변제금액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C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2021. 3. 13.에도 이미 C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합계액 약 32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 형태로 확보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 또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일부를 이전받음으로써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대출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가 C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위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는 원고가 갖게 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B이 설령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우선변제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전액 만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박관형, 판사 이창건

별지